

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
제1차 교육위원회
2022. 11. 28.(월)

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

교육위원회
(수석전문위원 박용조)

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
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경상북도교육감

2. 개정이유

- 공립 직업계고등학교, 특수학교 시설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조정하여 학교시설사업 업무의 위임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거점교육지원청의 시설 업무 과중을 해소하는 등 효율적인 시설업무를 추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거점교육지원청의 공립 직업계고등학교, 특수학교 시설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재정비 (안 제3조제5호)

4. 검토의견

- 가. 개정취지

- 본 개정 조례안은 공립 직업계고등학교, 특수학교 시설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조정하여 학교시설 사업 업무의 위임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거점교육지원청의 시설업무 과중을 해소하는 등 효율적인 시설업무를 추진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안 제3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고등학교·특수학교”를 각각 “고등학교(직업계고등학교는 제외한다)”로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

다. 종합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본청으로 이관되는 공립 직업계고등학교, 특수학교 학교시설 사업 업무의 위임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거점교육지원청의 업무과중을 줄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설업무를 추진하고자 조례를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